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대학원혁신본부), 02-970-6799

제정 2012. 11. 28.

타규정개정 2015. 6. 5.

타규정개정 2021. 9. 1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을 위해 등록하는 학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. 1.)

제2조(자격)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생 중 논문 제출시한 미경과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(이하 "수료 후 등록생" 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제출서류 및 절차) ① 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매 학기 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과 주임교수는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대학원 혁신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21. 9. 1.)

③ 대학원혁신본부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. (개정2021. 9. 1.)

제4조(등록) 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금 징수 및 활용) ① 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0% 해당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.(개정 2015. 6. 5.)

② 수료 후 등록생으로부터 징수한 등록금은 대학회계 예산으로 세입한 다.(개정 2015. 6. 5.)

제6조(학교 시설 등의 이용) 수료 후 등록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.

- 1.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
- 2. 차량 정기권 이용
- 3. 재학생에 상응하는 각종 상해보험 등의 가입
- 4.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시설 이용

제7조(학생증 발급) 수료 후 등록생에게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자격상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 후 등록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- 1.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
- 2. 지도교수가 추천을 취하하였을 때

부칙(제156호, 2012. 11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83호, 2015. 6. 5.)

(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 규정 제632호, 2021. 9. 1.> (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 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>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서식) (학칙개정 2021. 10. 1.)	
수료 후 등록생 신청서	
소 속	○○ 대학원 ○○학과 ○○과정
성 명	
학 번	
수료일자	
상기 본인은 본교 학칙 제79조제1항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운영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20 년 월 일

신청자 성 명: (인)

주 소:

(우편번호) **2** :

확인자

지도교수 : (인)

학과주임교수 : (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장 귀하